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 제7장 이용계약 >

제22조(이용시간 산정)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이용자의 가정에 도착하였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이용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제23조(기본의무) ① 이용자와 센터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이하 "계약"으로 한다)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센터에 보관해야 한다.

③ 센터는 이용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센터 일반정보, 제공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④ 계약 체결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용자 및 보호자와 사전협의 후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제24조(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
3. 센터의 이용 절차, 이용수칙, 사고의 책임 등을 구체화

제25조(계약기간) 계약기간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별도의 절차 없이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6조(계약의 준수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계약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 및 비급여 비용,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27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터 내에서 규칙이나 직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이 심한 치매나 문제행동으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본 센터 이용에 있어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된 자

②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서비스이용료 미납 등 보호자가 이용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③ 이용자나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제2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한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한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센터에 통보한다.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한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운영규정 제8장 이용료 >

제29조(서비스 이용료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센터의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센터는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고지하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1. 서비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의 비용
2. 관련 법령에 따른 서비스의 범위 또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서비스 비용
3.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30조(이용료 및 비용변경)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
급여비용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 또는 보호
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
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본인부담금 감경 사유에 의해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센터는 변경내용을 우편
이나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이 경우 계
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